



‘의장(意匠)’으로서 ‘디자인’ 개념의 역사적 검토: 한국 의장법(디자인보호법)에 나타난 ‘디자인’ 용어의 법적 수용과 전개*

박지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역사문화전공 박사수료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나타난 ‘디자인’ 용어의 법적 수용과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2005년 기존 의장법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 시행된 일본 의장법의 명칭은 해방 후 오랜 기간 한국의 법문에 남아 있었다. 이 연구는 19세기 말 ‘design’의 번역어로 선택되어 법문에 등장한 ‘의장’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이 용어가 오늘날 한국에서 ‘디자인’의 법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역사적 궤적을 검토한다.

주제어 의장,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디자인개념, 지식재산권

I.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인공물의 형태·색채·재질·비례와 같은 조형요소(또는 시각요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러한 조형요소를 주어진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품 디자인,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조형 활동의 의미를 넘어 디자인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 서비스 디자인, 정책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면서 창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의미도 더해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삶의 문화적 의미를

* 본 연구에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심사해주신 심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저자, jiyoonpark@snu.ac.kr

*** 교신저자, getto@snu.ac.kr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문화적 행위로 보는 시각도 확장되는(김민수, 2016) 등 디자인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법 제도 안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해석되고 있을까? 오늘날 디자인 관련 법령으로는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1961 제정), 산업디자인진흥법(구 디자인·포장진흥법, 1977 제정), 공공디자인진흥법(2016 제정) 등이 있지만¹ 이 연구는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 제도 안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용어를 통해 개념을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은 한국 땅에서 일본에 의해 시행된 한국 의장령(1908~1909)과 의장법(1910~1946)에 상당 부분 근간을 두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이기도 하면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산업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법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초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장법에 사용된 ‘의장’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의장’의 원 뜻을 살펴보고, 서구 ‘design’의 번역어로 ‘의장’이 채택된 경위와 법적 개념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법에 사용된 디자인 개념과 용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법 제도 저변에 깔린 디자인과 산업의 관계를 재편하고 디자인 개념 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2. 하부문제 설정과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 세 가지 하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오늘날 디자인보호법의 전신인 의장법에 사용된 ‘의장(意匠)’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기존 의장법(意匠法)이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중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의장’이

¹ ‘디자인’ 명칭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법령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디자인(물품의 형태)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이 세 가지 법률 외에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존재한다. 형태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서유경(2024)의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가상물품의 형태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체계에 관한 연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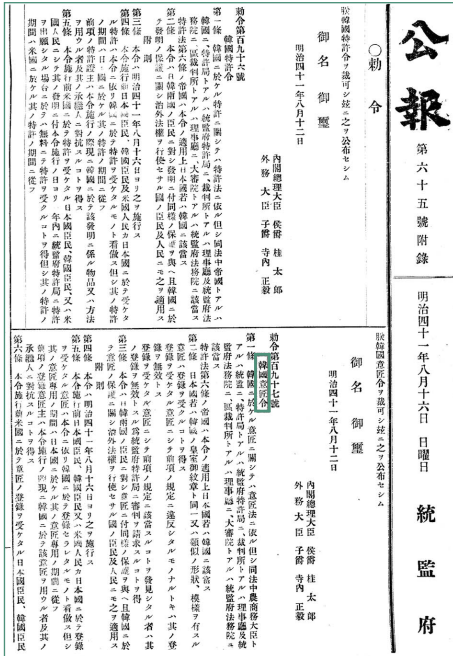
라는 용어는 1908년 통감부에서 시행한 한국의장령(韓國意匠令)부터 2005년 디자인보호법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한국의 법 제도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뜻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많은 문헌에서 ‘의장’을 일본 의장법을 통해 한국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로 설명하고 있지만² ‘의장’은 3세기 후반부터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이러한 ‘의장’의 용례를 검토하여 한·중·일에서 사용된 ‘의장’의 원 뜻을 밝히고, 그것이 19세기 후반 ‘design’의 번역어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둘째, 일본은 ‘design’의 번역어로 왜 ‘의장’을 선택하였으며, 이 용어는 어떤 이유로 해방 후 한국의 법문에서 지속해서 쓰였는가? 일본에서 ‘의장’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8년 의장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이다.³ 이 시기 일본은 국제질서에 발맞추고자 수많은 서양서를 번역하고 서구의 법을 계수(繼受)하여 법령 체계를 서둘러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적 개념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번역어를 탄생시켰다. 일본에서 서양의 법과 신개념을 번역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사상적 배경과 문화적 인식들이 작동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행된 일본 법령의 명칭이 2005년까지 한국 법 제도에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894년 조선의 공문서 양식에 주목했다. 순한문체에서 국한문혼용체로 변경된 공문서 양식이 일본의 한자어를 별다른 해석과 논의 없이 그대로 수용한 배경으로 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디자인’ 용어의 숨은 식민지성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일본의 번역어 ‘의장’에서 출발한 한국의 ‘디자인’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는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디자인 보호 관련 제도는 1908년 시행된 ‘한국의장령(韓國意匠令, 칙령 제197호)’이다. 1908년 8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6일 시행된 한국의장령은 당시 순종(純宗)의 칙령 형태로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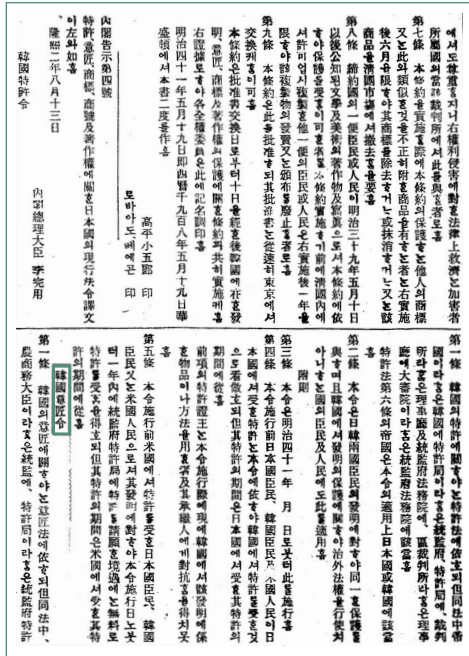
² “의장은 일본이 영어인 디자인을 뜻에 맞도록 한자식으로 만든 용어. 우리나라는 1908년 일본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들여와 ‘한국의장령’을 공포한 후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해왔다. 일본식 한자여서 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다 각종 법령에는 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돼 혼란이 많다”(이은우, 2009).

³ 일본은 1888년 의장조례를 제정, 1889년 시행하였고, 1899년 의장법을 제정하였다.



출처: 『통감부공보(統監公報)』 1908. 8. 1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그림 1 1908년 8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6일 시행된 칙령 제197호 한국의장령(韓國意匠令)



출처: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1908. 8. 1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그림 2 1908년 8월 13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이름으로 고시된 내각고시 제4호 한국의장령(韓國意匠令)

어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의 이름으로 고시(내각고시 제4호, 1908년 8월 13일)되었으나 그 실상은 한국 정부의 이름을 빌려 일본법을 시행한 것이다(서유경, 2024: 230)(그림 1, 그림 2 참조).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시행된 일본의 의장법은 해방 후에도 한국 의장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여전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908년 한국의장령에서부터 오늘날 디자인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법문에서 규정하는 ‘의장(디자인)’의 법적 정의의 변화를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사용된 자구(字句)를 통해 각 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디자인’의 법적 개념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용어 수용 과정을 연결지어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적

인 ‘의장’의 사용에 대해 한·중·일 각국의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의장’의 용례를 수집하였다. 1·2차 자료를 통해 문학서, 역사서, 철학서, 여행기, 예술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문헌에서 ‘의장’의 용례를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문헌에서 사용된 ‘의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근현대 사전에 명시된 의미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장법이 생겨나기 전과 후의 ‘의장’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의 법사, 제도사, 근대문화사 영역의 문헌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880년대 일본에서 번역어가 탄생한 배경과 이것이 한국에 수용된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다면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급속한 서구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일본 법학자들이 취했던 학문적·사상적 태도는 번역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같은 시기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개혁 의지는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당대의 정치적·제도적·문화적 상황이 서로 중첩되고 충돌한 지점들을 연결하여 오늘날 ‘디자인’의 법적 용어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II. ‘의장(意匠)’의 의미 변화

한국의 의장령이 처음 시행된 1908년부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2005년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장’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법문에서 사용되었다. 건축, 공예, 문학계⁴에서도 이따금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장(意匠)’은 ‘발명’과 ‘상표’처럼 완전한 일상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며, ‘실용신안(實用新案)’처럼 한자의 뜻풀이가 직관적이지 않아 의장법에 규정된 정의에 의존해 의미가 파악되어 왔다.⁵

⁴ “‘친일’이라는 일괄적인 수사로 사전에 등재된다는 하나의 ‘사건’은 ‘친일 청산’이라는 편리한 의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혜진, 2010); “이 시기(개화기)의 신문, 잡지들에 실린 것들 중에는 시사 토론문의 형태에 그대로 머무른 글들도 있고 문학적인 인식과 意匠의 도움으로 토론체 소설로 분류하기에 별로 손색이 없는 것들도 있다”(권오만, 2000: 313).

⁵ 법학자 이상정은 ‘의(意)’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소리로 발하는 것으로 보고 ‘의지의 발동’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견되는 ‘의장’의 용례를 통해 각 국가에서 사용된 ‘의장’의 원뜻을 살펴본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3세기부터 육기(陸機, 261~303)가 쓴 『문부(文賦)』에서 ‘의장’의 용례가 발견되며,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대중적으로 통용되기보다 한학(漢學)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층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 혹은 예술적 구상을 위한 ‘마음의 계획’, ‘창조적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888년 제정된 일본의 의장조례를 통해 ‘design’의 번역어로 ‘의장’이 법문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의장’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의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1909년부터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결합에 관련된 신규 의장의 공업적 고안을 한 자는 그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의장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의장법상 의장의 의미는 소수에 의해 사용된 전통적 의미보다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법문에서 인식하는 ‘디자인’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본 장에서 소개되는 용례 중 한국의 용례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이나, 중국과 일본의 용례와 원문의 해석은 히구치 다카유키·미야자키 기요시(樋口孝之·宮崎潤, 2004)의 선행연구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1. ‘마음의 계획’ ‘창조적 활동’

1) 중국의 용례

현재 발견되는 ‘의장’의 용례 중 가장 이른 것은 3세기 후반 육기(陸機, 261~303)가 쓴 『문부(文賦)』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부』는 훌륭한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운율을 갖춘 시문 형식으로 논한 문학 이론서이다. 6세기에 편찬된 『문선(文選)』에 실려 수(隋), 당(唐), 송(宋) 시대에 문학적 언어 창작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되어 한자의 표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학을 중시한 조선과 일본의

또는 ‘심중의 연구’라는 뜻이며, ‘장(匠)’은 상자와 도끼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 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므로 ‘의장’은 물건을 만드는 계획, 고안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이상정, 1995: 29). 이는 의장법에서 정의하는 ‘물품의 외형 즉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창의적 조형활동을 가리킨다.

문인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부』의 구절 중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요점을 포착하여 능숙하게 구성함으로써 (작문의) 명장이 된다”⁶라는 부분에서 ‘의장’은 마음에 그리는 ‘뜻(意)’을 전달하는 ‘기술(匠)’의 의미로 사용되어 ‘문학적 창작을 위한 구상 혹은 계획’을 의미하였다. 이때 사용된 ‘의장’은 성어(成語)가 아니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를 하나의 단어로 사용할 때 육기의 표현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한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1).

‘의장’이 성어로 사용된 최초의 예는 7세기 당나라 시인 양형(楊炯, 650~693)이 동료 시인 왕발(王勃, 649~676)의 글을 모아 낸 『왕발집(王勃集)』의 서문에서 발견된다. 양형은 왕발의 문학을 “온 세상의 다양한 재능을 하나로 모아, 진심으로 창의적인 구상에 마음을 쏟게 하고, 팔방의 훌륭한 일들이 모두 문장의 핵심에 담겨 있다.”⁷라고 칭찬했다. 이 구절에서 ‘창의적 구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의장’이 사용되었는데(樋口孝之·宮崎渭, 2004: 2) 이는 『문부』의 용례와 같이 ‘문학적 창작을 위한 구상, 즉 문학적 형식과 표현 기법을 창안하는 마음의 활동’을 의미한다.

많은 사전에서 ‘의장’의 어원으로 언급하는 대표적 용례는 8세기 두보(杜甫, 712~770)의 시에 나타난 구절이다. 두보의 시집 『두소릉집(杜少陵集)』에 실린 「단청인: 조패 장군에게 주다」에서 “황제가 장군에게 명하여 비단에 말을 그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받은 장군은 어떻게 그릴까 고심하며 구상하더니”⁸라는 구절에서 ‘의장’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의장’은 도상적 의미보다는 ‘취지’, ‘계획’, ‘구상’을 의미한다. ‘경영(經營)’과 함께 사용되어 ‘그릴 대상을 적절히 배치하고 구도를 구상하는 것’을 뜻한다. 두보는 『문선』 30권을 모두 암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의 시에서 『문선』의 어구를 다수 사용했던 점으로 보아 「단청인」에 사용된 ‘의장’ 또한 육기의 『문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2).

6 “意司契而為匠”, 陸機, 『文選』(樋口孝之·宮崎渭, 2004: 2).

7 “六合殊材 並推心於意匠 八方好事 咸受氣於文樞”, 楊炯, 『王勃集序』 『全唐文』 卷0191(樋口孝之·宮崎渭, 2004: 2).

8 “詔請將軍拂絹素 意匠慘淡經營中”, 杜甫, 764, 「丹青引贈曹將軍霸」, 『杜少陵集』 卷13(동양고전종합DB).

2) 일본의 용례

히구치 다카유키와 미야자키 기요시(樋口孝之·宮崎潤, 2004)는 ‘의장’이 일본에서 디자인 개념과 연결되기 전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었는지 밝히기 위해 시대별로 의미 변화를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헌에서 ‘의장’이 발견되었고, 두보의 시에서 유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보의 시와 다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파악하였다.

헤이안 시대 『권기(權記)』(작자 미상)에서 “원사(院司)들과 여러 사람이 마음을 담아 의장을 운용하고, 불구를 정리하며, 마음의 기술을 풀어 법복을 짚다.”⁹라는 구절을 ‘운의장(運意匠)’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정성스럽게 불교 도구를 정리하고 법복을 준비하는 과정 중의 ‘창의적인 구상과 수고’를 나타낸다(樋口孝之·宮崎潤, 2004: 3). 문학적 창작에 사용된 중국의 용례와 달리 예술적 물품의 외형과 조형적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세기 초 후지와라 노 유키나리(藤原行成)의 여행기 『해도기(海道記)』에서는 건축물이나 불교 관련 예술품을 묘사하면서 세밀하고 정교한 외형에 감탄하며 “전체적으로는 고유의 의장을 극한까지 추구하여 천상의 풍경을 닮은 손끝의 솜씨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다.”¹⁰라고 기술한 부분에서 ‘의장’을 사용하였다. 아름다운 ‘예술적 사물의 외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또한 문학적 창작을 위한 구상과 계획의 의미가 물리적 사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도 시대 중기의 사상가 미우라 우메조(三浦梅園, 1723~1789)가 쓴 자연철학서 『현어(玄語)』에는 “무용의 동작이 단순히 몸의 움직임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장의 전환을 통해 신령한 미묘함을 부르며, 복을 두드려 무용의 기교를 이룬다.”¹¹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사용된 ‘의장’은 무용의 동작

⁹ “於是院司等運意匠，以整佛具，抽心機，以織法服”(작자 미상, 연도 불명), 『權記』(樋口孝之·宮崎潤, 2004: 3).

¹⁰ “盤鴈燈ヲ挑タリ大方魯般意匠ヲ窮テ成風天ノ望ニ冷ク眦首手巧ヲ尽セリ發露人ノ心ニ僞ス”, 藤原行成, 『海道記』(樋口孝之·宮崎潤, 2004: 4).

¹¹ “舞踏自成於動作 而技巧由意匠變矣 有意之能 轉折意匠 嚙神靈之妙 弄鼓舞之巧”, 三浦梅園, 『玄語』(樋口孝之·宮崎潤, 2004: 4)

에서 기술과 기교를 변화시키는 요소로서 ‘무용수의 솜씨’, ‘창의적 발상’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예술적 사물과 이를 창작하는 조형 활동에서 무형의 무용 동작의 창의적 구상으로 그 의미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유빈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1878/10/29)에 실린 「어린이는 반드시 유치원에서 놀아야 한다」라는 투고문에 “의장을 예민하게 한다”¹²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의장’은 ‘사고 능력’, ‘창의력’의 의미로(樋口孝之·宮崎潤, 2004: 4) 보편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창의성을 뜻한다.

1878~79년에 발행된 『예술총지(芸術叢誌)』에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가 연재한 「서양화의 기원과 연혁(泰西画ノ起源并沿革)」 중 유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채색이 한 번 바르면 변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 번 그림을 수정해도 결코 화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충분히 의장을 다할 수 있게 된다.”¹³라고 쓰였다. ‘의장을 다한다(意匠ヲ尽ス)’는 표현은 두보의 시에 나타난 ‘의장경영’과 같은 의미이지만 일본식으로 변용된 표현으로 보인다.

회화와 관련된 ‘의장’의 또 다른 용례는 도조 긴다이(東條琴臺, 1795~1878)가 편찬한 『선철총담속편(先哲叢談続編)』(1884)에서 나타난다(樋口孝之·宮崎潤, 2004: 4). 고푸요(高芙蓉, 1722~1784)의 서화에 대해 “푸요는 글씨와 그림을 잘 그린다. 그가 붓을 잡을 때, 의장의 경영은 형상과 자취에 있지 않고, 붓의 운용에 있다.”¹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의장경영(意匠經營)’이라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어 두보의 시에 사용된 ‘의장’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당시 빠르게 진행되던 서구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 지식인들이 한학과 국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양일모, 2018: 44-45).

메이지 시대 미국인 선교사 제임스 헵번(James Curtis Hepburn, 1815~1911)은

¹² “意匠を鋭敏ならしむ”, 關信三稿, 1878, 「稚兒ハ必ス幼稚園ニ遊ハシムヘシ」, 『郵便報知新聞』 10월 29일, 3~4면(樋口孝之·宮崎潤, 2004: 4).

¹³ “元来此法ニヨルトキハ光沢着色テ変スル事ナク且數篇画ヲ改ムルモ敢テ画面ヲ損スルノ憂ナシ故ニ反復シテ充分ニ意匠ヲ尽ス事ヲ得ヘシ”, 西周, 1878-1879, 「泰西画ノ起源并沿革」, 『芸術叢誌』(樋口孝之·宮崎潤, 2004: 5).

¹⁴ “芙蓉好爲 書畫。當 其下 筆時,意匠經營。不在形跡。而在 於運筆”, 東條琴臺, 1884, 「高芙蓉」, 『先哲叢談続編』(樋口孝之·宮崎潤, 2004: 4).

1867년 일본어를 수집하여 영어 사전 『화영어림집성(和英語林集成)』을 발행했는데 ‘こころづもり’(마음속 계획) 항목에 대한 한자 표기로 ‘意匠’을 기재하였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4). 일본 고유어 ‘こころ’(마음)와 ‘づもり’(생각, 의도)가 합쳐진 단어로, 각 고유어에 일치하는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 사전의 초판(1867), 재판(1872)에서는 ‘こころづもり’ 항목에 해당하는 한자 표기로 ‘意匠’을 사용했다. 3판(1886)에서는 ‘こころづもり’, ‘こころだくみ’(마음 다짐), ‘意匠’을 음으로 읽은 ‘ISHŌ(いしょう)’¹⁵ 항목이 실렸고 모두 한자 표기로 ‘意匠’을 사용했다. 각각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こころづもり’는 ‘Thinking over, planning, reckoning or estimating in the mind’, ‘こころだくみ’는 ‘design; intention’, ‘ISHŌ(いしょう)’는 ‘design; intention; contrivance; plan’이 기재되었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5-6). 즉 한자어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1880년대에 ‘의장’을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로 인식한 음독 ‘이쇼(ISHŌ, いしょう)’가 등장했고, 이것이 영어 ‘design’으로 번역된 것이다. 하지만 ‘design’의 유의어로 ‘intention, contrivance, plan’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사물의 외형’을 의미하기보다는 ‘계획과 의도’로서 ‘디자인’의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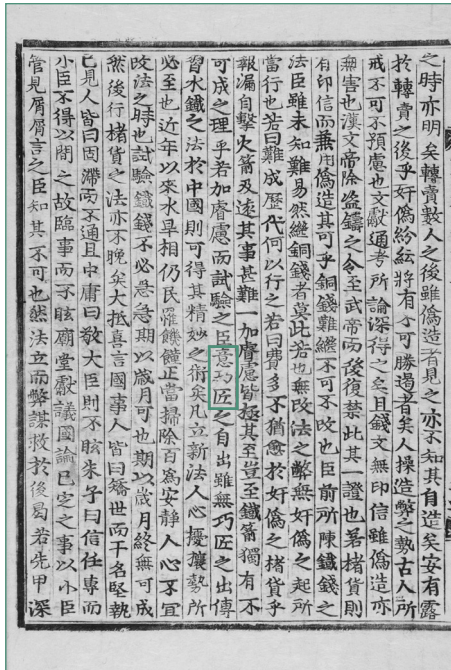
1870~80년대 일본에서는 한자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한자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한어 사전이 발행되었다. 이 중에는 ‘의장’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¹⁶ 수록된 경우에도 대부분 그 의미를 ‘오모히츠키(思ひつき, 생각하다)’로 해석한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6)는 점에서 ‘의장’은 여전히 고유어 ‘こころづもり’에 가까운 ‘사고와 활동’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용례

한학의 전통을 공유한 한국에서도 ‘의장’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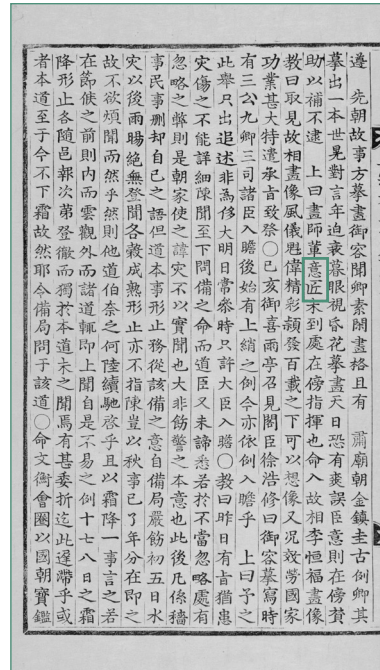
¹⁵ 현대 일본어 사전에서는 ‘意匠’을 ‘いしょう’라고 표기한다. 표기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쓰여진 고문헌에서는 ‘いしょう’로 표기하지만 발음은 ‘ISHŌ’로 같다.

¹⁶ 메이지유신 전후에 발행된 대표적인 한어 사전인 『신령자해(新令字解)』(1867), 『한어자류(漢語字類)』(1869), 『증보 신령자해(增補新令字解)』(1870), 『어휘(語彙)』에도 ‘의장’은 실리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의장’이 일부 식자층 사이에서 사용되기는 했지만 외국어로서 한어 문법을 사용한 것이기에 사전에 실릴 정도로 공식화된 표준 일본어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樋口孝之·宮崎渭, 2004: 6-7).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림 3 『세종실록』 110권(1445)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림 4 『정조실록』 12권(1781)

이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자가 확인한 용례는 조선시대 문헌들에서 발견되었다(그림 3, 그림 4 참조). 1445년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 1404~1459)은 당시 저화(楮貨) 사용의 폐단에 대해 올린 상소문에서 저화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묘한 의장’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 중국에서 수철법(水鐵法)을 전습하면 정교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종실록』, 110권, 1445). 이 무렵에는 저화 자체의 크기와 훼손되기 쉬운 재질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였고, 위조하기 쉬운 저화의 유통을 반대하는 상소가 많았는데, 이계전은 위조 화폐를 막기 위해 위조가 어려운 ‘의장’의 종이 화폐를 만들지 못한다면 주화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때 ‘의장’은 화폐의 모양, 형태, 크기, 색채, 제작 방법 등을 포함하지만 저화의 평면적 특성상 ‘모사하기 어려운 2차원적 문양(그레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1781년 정조가 서화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에게 어용을 모사하는 일을 맡기자 강세황은 “나이가 노쇠해 눈이 흐릿하여 잘못되는 점이 있을까 걱정스러우니 곁에서 찬조하면서 미흡한 점을 돕겠다”라고 청하고, 이에 임금이 “화사(畫師)들의 ‘의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곁에서 지휘토록 하라” 『정조실록』 12권, 1781)고 답했다. 여기서 ‘의장’은 어용을 모사하는 작업에서 전체 구도와 제작 방식 등을 아우르는 뜻으로 작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모든 정신적·물리적 활동을 말하며, 작품의 결과물과 그 완성도의 수준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장’의 용례가 『세종실록』과 『정조실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조선시대 ‘의장’의 사용이 두보의 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한시(漢詩)는 고려 이래 과거 시험 과목이었고 조선 지식인의 기본 소양이었다. 이백, 두보, 한유의 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핵심으로 꼽혔는데(임도현, 2015: 193-194) 이중 두보는 한시 창작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 인물로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에서 최초로 간행된 두보 시 전집은 세종이 발간한 『두공부초당시전』(1431)이다.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풀이한 『두시언해』는 1443년(세종 25) 4월에 착수해 38년 만인 1481년(성종 12)에 완성되었다(이길구, 2018). 정조 또한 문체반정을 일으켜 당시 유행하던 소설 문체를 엄격히 금하고 고전 문체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세종과 정조 모두 시학을 중요시하여 고전 문학의 대표 모델로 두보의 시를 칭송하였다는 점에서 실록에 나타난 ‘의장’의 사용은 이러한 시대상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에서도 ‘의장’이 사용된 예가 보이는데, 인조(1회), 숙종(2회), 영조(7회), 정조(5회), 순조(3회), 순종(1회) 대에 이르기까지 총 19차례 발견되며, 이 중 일본의 의장법을 지칭한 순종의 경우¹⁷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마음의 계획’이나 ‘예술적 구상’, ‘창작의 솜씨’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¹⁷ 순종의 경우 “商標及意匠(상표급의장)에 關(관)한 事項(사항)”으로 특허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승정원일기』 3215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 11월 9일 병신 3/6 기사, 1907년[光緒(淸/德宗) 33년].

개성 출신 관료 임효헌(林孝憲, 1784~?)의 『송경광고(松京廣攷)』(1823)에서도 ‘의장’의 용례가 발견된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서에서는 제6권 「누정(樓亭)」, 「남대문루(南大門樓)」에서 새로 건립된 누각에 대한 감탄과 그 건축이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의장여료리(意匠與料理)”는 “건축의 구상과 건축 과정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깊은 계획과 전략에 의한 것임”(국사편찬위원회)을 나타낸다. 즉 조선시대에 ‘의장’은 중국과 일본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만드는 예술적·조형적 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조선에서도 그 용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널리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잡지 못하고 일부 식자층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2.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60~70년대 발행된 일본 사전에서는 ‘의장’ 항목이 실린 경우가 드물었다. 1888년 의장조례가 제정된 후 1890년대 일본 국어사전에 ‘의장’ 항목이 실렸는데, 이 시기는 의장조례 법령에서도 ‘의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전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마음의 다짐, 생각’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19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장법상 의장의 정의, 즉 ‘공업상 이용가능한 형태,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고안’의 의미가 사전에 추가되었는데(樋口孝之·宮崎渭, 2004: 8),¹⁸ 1909년 개정된 일본 의장법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888년 법적 용어로 ‘의장’을 채택한 시기로부터 1909년 법적 의미 규정이 확립된 시기까지 약 20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고전에서 차용한 ‘의장’이 전통적 의미에서 떨어져나와 새로운 법적 의미를 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의장법이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도 시행되면서 ‘의장’의 새로운 의미가 확산되었다. 먼저 중국에서는 중국어 사전 『사원(辭源)』(1915 초판)과 『사해(辭

18 “① こころのたくみ, かんがへ. ② 工業上の物品に応用すべき形状・模様・色彩又は其の結合に関する新規の考案”, 金沢庄三郎, 1911, 『辞林』(樋口孝之·宮崎渭, 2004: 8).

海』(1936~1937)에서 ‘의장’을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하나는 육기의 『문부』와 두보의 『단청인』에 나타난 ‘의장’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의장법을 근거로 ‘산업 제품의 형태, 디자인, 장식 등이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된 것’이다(樋口孝之·宮崎潤, 2004: 2).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의장법상 ‘의장’의 의미는 점차 흐려지고, 전통적 ‘의장’의 의미가 오히려 강화된다. 『사해』 1965년 개정판과 『사원』 1980년 개정판에서는 육기와 두보의 용례를,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1986~1994)에서는 육기, 두보, 양경의 용례뿐만 아니라 송나라 육유(陸游, 1125~1210), 청나라 조익(趙翼, 1727~1814), 메이지 시대 원이뉘(聞一多, 1899~1946)의 글에 사용된 의장의 용례를 추가해 전통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樋口孝之·宮崎潤, 2004: 2).

반면 의장법상 의미는 점차 흐려지다가 1980년대가 되면 사전에서 사라진다.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에 따라 1985년에 새로운 특허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전반을 ‘전리권(專利權)’으로 표현하였다. 이 중 의장권은 ‘외관설계전리권(外觀設計專利權)’, 대만에서는 ‘신식양전리권(新式樣專利權)’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4년 『한자외래사사전(漢語外來詞詞典)』에 일본 의장법에서 유입된 외래어로 수록되어(樋口孝之·宮崎潤, 2004: 3) 법적 의미의 ‘의장’은 외래어로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마음의 계획’, ‘창조적 활동’으로서 ‘의장’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널리 통용되던 용어가 아니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용 빈도는 점차 희미해졌다.¹⁹ 의장법이 존속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의장법의 정의대로 의미가 남았고, 의장법 명칭을 변경한 중국에서 ‘의장’은 고어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¹⁹ 20세기에도 고바야시 히데오(小林 秀雄, 1902~1983)의 평론 데뷔작 『様々な意匠(각양각색의 의장)』이 1929년에 발표되었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이효석(1907~1942)의 소설 『마음의 의장(意匠)』이 1934년 발표되는 등 일부 지식인층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용례가 드물어진다.

III. 일본의 근대법과 ‘design’의 번역어 ‘의장(意匠)’

오랜 기간 ‘의장’은 문학, 회화, 건축을 대상으로 디자인적 사고와 행위를 지칭하였지만 의장법에서 정의하는 의장은 물품에 기반한 시각요소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의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design’의 번역어로 ‘의장’을 선택했는지 당시의 정치적·문화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일본의 번역어가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 그대로 한국에 흡수되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공문서 양식에 사용된 문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국제질서로의 편입과 일본의 서양법 계수(繼受)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교역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는 한편,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대적 법전 편찬에 박차를 가하였다. 법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일본은 서양에서 학자를 초청하여 서구 법전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는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본 법학자가 기초한 법전이 시행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다.²⁰

일본의 특허제도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국가 기본법보다 먼저 정비되었다. 일본 최초의 특허제도는 1871년 도입된 전매략구칙이었지만 이듬해인 1872년에 폐지되고 만다. 이후 1884년 상표조례를 시작으로 1885년 전매특허조례, 1888년 의장조례가 제정되었고, 1905년 독일의 법을 모방한 실용신안법

²⁰ 프랑스 법학자 귀스타브 부아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 1825~1910)는 1879년 일본 민법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위임받아 약 10년에 걸쳐 프랑스 민법의 구성과 내용을 따른 민법 초안을 작성하였고(우치다, 2022: 173), 1881년 독일인 카를 뢰슬러(Karl Friedrich H. Roesler, 1834~1894)에게 상법의 기초를, 1886년 독일인 헤르만 테호(Hermann Techow, 1838~1909)에게 민사소송법의 기초를 맡겨 독일식 법전을 준비하였다(우치다, 2022: 73). 부아소나드의 민법과 뢰슬러의 상법은 1890년 공포되었지만 호즈미 노부시게(穂積 陳重, 1855~1926)를 포함한 일본 법학자들이 일본의 역사 및 전통과 관계 없는 서구의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반발하여 법전논쟁이 일어난다. 결국 시행이 연기되어 일본인 기초자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민법과 상법이 각각 1896년, 1899년 시행되었다(우치다, 2022: 172-182).

이 추가되었다(JPO, 2005: 5). 1921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사법으로 체계를 정비하여(서유경, 2024: 230) 오늘날 특허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

1870~80년대에 걸쳐 제정된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1890년대에 완성된 국가 기본법보다 먼저 시행된 것은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통상조약(美日修好通商條約)을 비롯한 소위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불평등조약의 개정은 1894년에 실현되었는데, 일본은 그 개정의 사후 조건으로 제시된 두 개의 국제조약(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도 1899년 모두 가입하였다.

2. 한자어 중심의 번역어와 ‘의장’

고대 한문으로 출발한 일본의 법문은 점차 고유법화, 민중화되어 에도 시대에는 표음문자인 가나(仮名)를 혼용하여 비교적 읽기 쉬운 문체가 되었다. 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가타카나 혼용 한문조로 바뀌게 된다(우치다, 2022: 289-290). 법문에서도 종래의 관용어를 버리고 ‘법령(法令)’, ‘포고(布告)’, ‘포달(布達)’, ‘달(達)’, ‘조례(條例)’ 등의 용어로 개정되었고, ‘법률(法律)’, ‘칙령(勅令)’, ‘각령(閣令)’, ‘성령(省令)’ 등 한자어로 된 새로운 법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우치다, 2022: 289-292). 일상의 담화와 서한에서도 한자어 사용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메이지유신 전후 30~40년 동안 방대한 양의 서양서가 번역된 것과 관계가 깊다(카토, 2004: 459-460). 1880년대 전후 일본은 ‘번역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정부 주도하에 역사, 군사제도, 과학기술, 의학 관련 서적을 빠르게 번역하였고(마루야마·가토, 2000: 57; 146-167),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는 데 간결하면서도 추상적 개념을 가진 한자어를 적극 활용했다.

호즈미 노부시게(穗積 陳重, 1855~1926)는 법문이 가타카나 혼용 한문조가 된 원인으로 새 정부 관리가 대체로 한학자 출신이라는 점을 꼽았다(우치다, 2022: 291). 신정부의 입법을 맡은 에토 신페이(江藤新平, 1834~1874), 오오키 다카토오, 형률의 편찬자인 미즈모토 나루미, 군사법을 기초하고 수많은 학술 용어를 번역한 니시아마네 등이 한학의 대가였던 것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일본은 교육과 제도의

서양화를 추진하였고 도쿄대학은 서양 학문을 중심으로서 당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급속한 서양화를 주도했다.

급속한 서양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학과 국학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도쿄대학에서는 화한문학과(和漢文學科)를 개설하고 1882년에는 별도의 임시 고전강습과를 개설해 일본의 고문과 중국의 고전을 중심으로 한문 원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양일모, 2018: 44-45). 빠르게 서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위기의식에서 한자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더구나 한자어는 근대 국가의 바탕이 될 새로운 법조문을 적당히 어렵고 권위 있는 용어로 구성하는 데 유용한 해결방안이 되었다.

고전 중국어 문장은 어순을 바꾸고 어미와 조사 ‘테니오하(てにをは)’를 넣어 일본식으로 읽는 요미쿠다시(読み下し) 방식으로 읽었다. 메이지 시대 번역자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한자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방대한 양의 서양서를 번역할 수 있었다(카토, 2004: 469). 번역어로 만들어진 신조어는 대부분 한자어였는데, 이전부터 있던 한어 즉 고전에 의거한 한어를 사용한 경우이거나 완전히 새롭게 조합된 한자어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철학’, ‘이성’, ‘예술’, ‘연역/귀납’, ‘주관’, ‘추상’ 등 많은 학술어와 개념어를 번역했던 니시 아마네가 만든 번역어 중 절반(340개)이 고전에 의거하며, 나머지 절반(447개)은 한문으로 된 신조어이다. 고전에 의거한다 해도 원래 의미가 지워진 채 번역어로서 의미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카토: 2004: 482-489) ‘의장’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니시 아마네는 앞서 살펴본 「서양화의 기원과 연혁」(1878-79)이라는 글에서 직접 ‘의장’을 사용했던 인물로, 두보의 시로부터 유래한 ‘의장’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가 직접 의장법의 ‘의장’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번역어에 대한 당시 그의 영향력을 본다면 그가 사용한 ‘의장’의 예가 번역어 채택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3. 국한문혼용체 공문서와 ‘의장’ 개념의 수용

고전에서 유래했지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며 차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친 ‘의장’은 일본의 법령을 통해 한국에 이식되어 해방 후 2005년까지 한국 법문에 존

속했다. 의장을 포함한 많은 일본제 한자어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자라는 공통된 문자문화가 있었다.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에서는 감옥, 경찰, 군대, 법원 등이 개혁되었고(한상범, 1995: 92),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인 고문관이 정책 수립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일본법을 모범으로 하여 일본이 강요한 내정개혁을 법으로 구체화시켰다(정공식, 2002: 57).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갑오개혁기에 정부가 공문서 관리 규정을 정하고 국문을 기본으로 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김종준, 2017: 200). 개혁을 주도한 자들은 친일 개화와 세력이었고, 1886년 일본 내각제도가 창설되면서 반포된 칙령 ‘각성관제통칙(各省官制通則)’이 1894년 11월 ‘공문식’의 모범이 되었다(김종준, 2017: 228). 고종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대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문 사용을 규정했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사법 관련 문서들도 순한문체에서 국한문체로 바뀌었고(김종준, 2017: 210-212) 민간에서도 순한글을 사용한 『독립신문』과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이 발행되는 등 민간과 정부, 재야의 지식인 모두 정도와 방법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김종준, 2017).

역설적이게도 공문서의 국한문혼용체 사용 원칙은 통감부의 영향력 아래 확립되었다(김종준, 2017: 228). 이는 한글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한문에 토를 다는 수준으로 사용되던 국한문혼용체가 훨씬 선호되었기 때문이다(권태익, 1994: 92-93). 하지만 이는 ‘의장법’ 같은 일본 법령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번역 대신 한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만든 새로운 한자어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에 수입된 일본식 한자어는 비단 ‘의장’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발명, 실용신안, 상표와 같은 법률 명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통해 도입된 서구의 개념이었고, 국어 사용 전반에 걸쳐 일본제 한자어의 영향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용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용어에 비해 그 의미가 모호한 채로 개념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산업재산권법에서 사용되는 ‘발명’과 ‘상표’는 법률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가

상당부분 합치되며 완전한 일상 용어로 정착되었다. ‘실용신안(實用新案)’도 법률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한자의 뜻풀이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장’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어가 아닐뿐더러 한자의 뜻풀이 또한 추상적 성격이 강해 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의장법의 명칭이 변경된 이유도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IV. 한국에서 ‘의장(디자인)’의 법적 정의의 역사

본 장에서는 한국의장령에서부터 오늘날 디자인보호법까지 법률상 ‘의장(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통해 실제로 의장(디자인)이 어떻게 정의되고 인식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 사용된 자구의 변화를 통해 의장(디자인)의 개념 변화를 읽어내고자 한다.

1. 1908년 형태와 모양

한국의장령은 1908년 8월 12일 통감부에 의해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의장령 제2조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황실어문장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 모양의 의장은 등록을 하지 못함. 등록을 한 의장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등록을 무효로 함”(舊韓國 官報, 1908/08/15)이라고 명시하였다. ‘의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필수 요건을 제시하기보다 의장 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우선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록 요건의 기준으로 ‘문장(敍章)’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의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엿볼 수 있다. 평면과 입체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제국기 황실 문장이 우표, 동전, 훈장, 휘장, 은제품, 가구, 건축 등 다양한 물품에 적용되었으므로 이때의 ‘의장’은 평면과 입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예술적 구상과 창안’이라는 원뜻으로 보아 ‘의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미적 요소가 내포되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5 이화문의 형태로 제작된 '한미명이화형 잔받침'. 1908~1913



출처: 목수현(2021),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 한국의 국가 상징 이미지』, 212쪽.

그림 6 덕수궁 석조전 박공의 이화문 부조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7 1907년 일본대판조폐국에서 발행한 오전(五錢) 화폐의 이화문



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6, 그림 7 참조). 기능성과 분리된 장식적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며 공업적 생산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이므로 공업적 혹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요건은 없었다.

2. 1921년 공업적 이용가능성

1899년 제정된 일본의 의장법은 1909년과 1921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장령도 1909년에 개정되었고, 1921년에는 일본의 법을 그대로 한국에서

도 시행하였으므로 일본 개정법을 따랐다. 1921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등록 가능한 의장의 요건으로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물품과 관련 없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로 해석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구체적으로 물품의 외형에 적용된 의장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Yabumoto, 2022: 24). 이때부터 ‘물품성’이 의장법의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한국 디자인보호법에 서도 강조되고 있다.

1921년 개정 내용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장등록자의 요건이다. 이전에는 의장을 만들도록 의뢰한 이나 의장을 만든 이의 고용인만이 의장출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기업인이나 특권층만 출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21년 개정 후에는 의장을 직접 고안한 피고용인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Yabumoto, 2022: 22-24). 자본가나 기업인이 아닌 일반 조선인 개인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지면서 1920~30년대 조선인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²¹ 또한 이 시기부터는 조선에서도 특허권이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3. 1931년 심미성

의장법에서의 ‘미감(美感)’에 대한 언급은 1931년 처음 등장한다. 1931년 의장출원규칙에서는 의장을 “미감을 일으키고 취미(趣味)를 느끼게 하는 고안으로, 물품의 형태·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외관에 드러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단순히 물품의 시각적 요소를 넘어 심미적 감흥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의장을 정의했는데 오늘날 한국 디자인보호법에서 중요한 등록 요건 중 하나인

²¹ “명치, 대정년간에는 조선인 발명으로 기(其) 존재가 매우 요요(寥寥)하였지만 대정 14(1925)년부터는 발명자가 축연증가(逐年增加)되어 소화 10(1935)년에 이르러서는 특허 5건, 실용신안 35건에 달하게 된다”(김용관, 동아일보, 1938/01/16); “실용신안의 곡선을 보면 대정 4(1915)년으로부터 상승하고 대정 14(1925)년에는 다시 급상하였으며 소화 4(1929)년부터는 더 급격한 상승을 보 이었고, 소화 11(1936)년에는 실로 천정을 찌를 듯한 상승형세를 보하여준 것이다”(김용관, 동아일보, 1938/01/18).

‘심미성’ 규정이 처음 나타난 것이 이때다. 이는 의장의 미적 속성을 강조한 것은 물론 그러한 속성이 공업소유권으로 보호할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31년 ‘의장’의 정의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심미성을 설명하는 자구(字句)에서 나타난 ‘취미(趣味)’라는 용어다. ‘취미’가 1900년대 일본 내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화적 현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법문에 등장한 ‘취미’는 당시 일본인들이 ‘의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전통적 개념에서 ‘취(趣)’는 원래 ‘대상물 자체가 가진 멋’을 말하지만, 1907년경 유행하기 시작한 ‘취미’라는 용어는 서구적 인식의 ‘취향(taste)’과 즐기기 위해 좋아하는 ‘취미(hobby)’의 의미가 근대에 와서 새롭게 덧붙여진 것이다(진노, 2008: 4). 이 중 ‘taste’의 의미에는 아름다운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판정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담겨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취미 담론은 근대 소비사회에서 인간과 물건의 관계를 재편한 문화적 현상이었다(진노, 2008: 29).

서구의 법 제도와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근대 산업경제 구조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에 잠시 등장한 ‘취미’라는 용어는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개인적 취향의 인식 같은 근대적 문화 심리를 반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취미’는 ‘hobby’의 의미로 굳어지고 법문에서 사라졌지만, 1930년대 ‘의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이끌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심미적 요소를 설명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4. 1946년 미장(美匠)

해방 후 미군정법령으로 제정된 특허법은 미국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을 참고하여 새롭게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으로 4권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특허법은 하나의 법령 아래 발명 특허, 식물 특허, 실용 특허, 미장 특허를 포함하였다(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 제18조-21조). 이때 ‘의장’ 대신 ‘미장(美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용어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기 결합에 관하여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 제20조, 제21조)을 미장 특허

로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미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미감’이라는 용어보다 ‘장식적이고 산업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미장의 객관적 요건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 디자인 특허 규정에서 ‘decorative’를 번역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정치범보호관찰령 등 민족적 차별과 압박을 가하려는 특별법과 식민주의적인 일반 법령들은 대부분 폐지하였다(미군정법령 제11호, 1945. 10. 9.). 하지만 군정 통치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 기존 조선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이에 「법률제명령의 존속」(군정법령 제21호, 1945. 11. 2.)을 공포하여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발표한 제령 상당수의 효력을 유지했다. 일제의 법령체계와 행정체계는 해방 후까지 존속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해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기 법령의 영향이 이어지게 되었다(한상범, 1994: 18-19; 54-55).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군정이 1946년 일본의 특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특허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다분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의 상황과 기술혁신 역량을 깊이 고민하거나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 직후 혼란기에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정차호, 2004: 4), 1961년 한국의 법으로 새롭게 특허제도가 마련될 때 한국 정부는 다시 일본의 특허제도를 모델로 하여 일본법의 구조와 체계를 받아들였다.

5. 1961년 다시 일본의 ‘의장’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 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48년 7월 17일 전에 시행된 법령 중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법을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허법은 전부개정, 상표법은 일부개정, 의장법과 실용신안법은 새롭게 제정되어 산업재산권 4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구 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이유로 “과거의 법령, 특히 우리를 무력으로 점령한 일제의 법령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아니하였다”(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 제5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일제 청산 구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허 제도는 다시 일본을 모방해 제·개정되었고 용어 또한 일본을 따랐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법을 따른 것이 지정학적·문화적 유사성에 따라 미국 특허법보다 접근이 용이했다는 의견도 있다(Junha Kim, 2022: 69-70). 그러나 해방 후 바로 수정되지 못한 채 이어져온 특허제도가 한국전쟁 후 국가 재건이라는 더 크고 시급한 의제를 안고 있던 한국에서 새로 제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법률학자들은 일제하 관료 출신이거나 제국대학 출신으로 1930~40년대에 일본 법학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현실적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상범, 1994: 20).²²

6. 1974년 물품성과 심미성의 강조

1973년 2월 8일 한국 의장법은 지식재산권 제도 기본법인 특허법 개정과 함께 전부 개정되고 1974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의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심미성’에 대한 강조이다. 일제강점기 의장법에서 의장의 요건으로 강조된 ‘심미성’ 요건이 다시 도입된 것이다. “의장의 본질에 비추어 기술적인 창작에 속하는 것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관상 심미감이 있는 창작에 한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의장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2507호, 1973. 2. 8., 전부개정)이라고 밝히며 의장의 본질은 외관상 심미감을 주는 것임을 명문화했다.

의장법에서 심미감은 1931년 ‘미감을 일으키고 취미를 느끼게 하는 고안’에서 1946년에 ‘장식적’이라는 표현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가, 1973년 전부개정

²² 한상범은 일제의 잔재인 관료주의와 관료법학의 병폐가 해방 후 미군정기에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가 1961년 군사독재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되어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이 시기 활동한 “법학자들은 1930년나 1940년대 일제의 암울한 파시즘의 시대에, 시민법학이 붕괴되어 국수주의나 나찌즘이 판을 치는 전쟁시대에 일본법학을 배운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사소한 동경대학 출신의 학자들의 이론을 베껴 법학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써 당장의 수요에 충당한 점을 지적하였다(한상범, 1994: 20-21).

표 1 의장법(디자인보호법)에서 의장(디자인)의 정의

개정연도	법령	의장법(디자인보호법)에서 ‘의장(디자인)’의 정의
1908	통감부 한국의장령	“일본이나 한국의 황실어문장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 모양의 의장은 등록을 하지 못함.” “日本國若ハ韓國ノ皇室御紋章ト同一又ハ類似ノ形狀, 模様ヲ有スル意匠ハ登録ヲ受クルコトヲ得ス” 勅令第百九十七號 韓國意匠令 第二條 統監府公報 第六十五號附錄. 1908. 8. 16.
1921	조선총독부 한국의장법	“물품에 관하여 형상·모양·색채 또는 결합에 관련된 신규 의장의 공업적 고안을 한 자는 그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법 제1조 [시행 1922. 1. 11.] [조선총독부법률 제98호, 1921. 4. 29., 전부개정]
1931	조선총독부 한국의장법	“미감을 일으키고 취미를 느끼게 하는 고안으로,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외관에 드러나는 것” “意匠法に所謂意匠とは「物品の目先を愛へ人をして美觀若ハ趣味を感じしむる考案」を謂ふ從て物品の形で、模、色彩又は此等を種々Xに組合はせたる點に顯はれ來る外觀的のものにして其の品質構造又は製作方法等には關係なきものた” 「의장등록출원규칙」, 경성상공회의소, 1931. 5. 25.
1946	미군정법 특허법 (미장특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기 결합에 관하여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을 고안한 자는 기 미장에 대하여 미장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음” 특허법 제21조 [군정법령 제91호, 1946. 10. 5., 제정]
1961	의장법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을 고안한 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법 제2조 (등록의 대상) [시행 1961. 12. 31.] [법률 제951호, 1961. 12. 31., 제정]
1974	의장법	“이 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법 제4조 (의장의 정의) [법률 제2507호, 1973. 2. 8., 전부개정]
1990	의장법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법 제2조 1항 [법률 제4208호, 1990. 1. 13., 전부개정]
2001	의장법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의장법 제2조 [법률 제6413호, 2001. 2. 3., 일부개정]
2005	디자인보호 법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2조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24	디자인보호 법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2조 [법률 제20200호, 2024. 4. 20., 개정]

출처: <http://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및 재정리

때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한 후 오늘날의 디자인 보호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의장법 전부개정은 미국 특허법의 영향을 벗어나 일본 의장법을 직접 계수한 것으로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서유경, 2024: 48). 이후 한국 의장법은 부분 의장제도 도입(2001), 글자체 보호(2005), 화상디자인 보호(2021) 등 디지털 기술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1974년의 의장법 정의가 2025년 오늘날 현행 디자인보호법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감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디자인의 미적 가치는 장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물품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기능미에서 발현되기도 하므로 장식미와 기능미 중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 없다(김민수, 2016: 77-90). 무엇보다 디자인보호법상 ‘미감’에 대한 정의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심미성 요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조경숙, 2017).

V. 결론

지금까지 ‘의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원 뜻을 살펴보고, ‘design’의 번역어로 법문에 등장한 ‘의장’의 정의 규정을 통해 ‘디자인’의 법적 개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의장’은 한·중·일 삼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나 표준어로 인식될 만큼 널리 통용되지는 못했고, 한학을 공부한 일부 식자층 사이에서 ‘예술적 구상’, ‘생각하다’, ‘계획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조형활동과 추상적인 사고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장법상 ‘의장’은 물품성에 기반한 시각적 요소로 좁은 범위의 디자인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고전문의 한어를 차용해 번역어를 생산한 일본의 번역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의 의미로부터 떨어진 ‘의장’은 일본의 근대적 법령의 옷을 입고 한국에 들어와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어의 모습으로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법문에 존속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한자의 뜻풀이도 추상적인 탓에 법문에 규정된 문구에 기대어 그 의미가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용어로 곁들던 ‘의장’은 결국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법은 언어이고,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적 산물이자 사고 체계이다. 법문에 사용된 용어는 법적 개념을 형성하는 단초로서 법인식과 법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법체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용어를 사용해야 함이 전제 조건일 것이다. 산업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정보 사회로의 진입으로 ‘디자인’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디자인 영역 또한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산업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을 수용하고 적절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 개념의 변화를 이해하고, 사용된 용어의 연원과 정착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역사 인식은 필수적일 것이다.

투고일: 2025년 2월 13일 | 심사일: 2025년 6월 16일 |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권오만. 2000. “III. 근대 문학과 예술.”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5. 신문화 운동 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권태역. 1994.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민수. 2016(초판 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문화·상징의 변증법』. 서울: 그린비.
- 김종준. 2017. “대한제국기 공문서와 신문 문체에 나타난 전환기적 특성.” 『규장각』 51, 197-236.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2018).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서울: 이산.
- 서유경. 2024. “가상물품의 형태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아미노 마코토. 2009. 『商票』. 강동수·강일우 옮김. 서울: 대광서림.
- 양일모. 2018. “한학에서 철학으로: 20세기 전환기 일본의 유교 연구.” 『한국학연구』 49

집, 41-66.

우치다 타카시. 2022. 『법학의 탄생: 근대 일본에서 ‘법’은 무엇이었는가?』. 정종휴 옮김.

서울: 박영사.

이상정. 1995.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이혜진. 2010.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정신문화연구』 33(3): 259-287.

임도현. 2015. “조선의 杜甫 시 학습서의 특징.” 『한국문화』 72: 193-220.

정궁식. 2002. 『韓國近代法史攷』. 서울: 博英社.

정차호. 2004. “한국 특허제도의 변천: 특허권 강화의 역사.” 『과학기술정책』 14(3): 79-107.

조경숙. 2017.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 요건의 완화 해석을 위한 제언.” 『지식재산연구』 12(4): 77-102.

진노 유키. 2008.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문경원 옮김. 서울: 소명.

카토 슈이치. 2004. 타지마 테츠오·박진영 옮김. “메이지 초기의 번역: 왜·무엇을·어떻게 번역했는가.” 『현대문학의 연구』 24: 459-509. (DOI: G704-000952.2004..24.008)

한상범. 1994.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서울: 교육과학사.

樋口孝之·宮崎渭. 2004. “日本における漢語「意匠」の受容と解釈.” 『デザイン学研究』 50(5): 1-10.

Kim, Junha. 2022. “Chapter 4: History of Design Protection in South Korea.” Aso Tsukasa ed., *History of Design and Design Law*, Singapore: Springer.

Yabumoto, Masanori. 2022. “Chapter 2: History of Design Protection in Japan.” Aso Tsukasa ed., *History of Design and Design Law*, Singapore: Springer.

1차 자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松京廣攷』,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DB

『舊韓國 官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杜少陵集』, 동양고전종합 DB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민수. 1999. “컴퓨터 글꼴 왜 저작권보호 않나.” 한겨레(4월 15일).

이길구. 2018. “조선이 ‘시성’ 두보를 숭배한 이유는?” 세종포스트(12월 17일). <http://www.sjpost.co.kr>(검색일: 2024. 12. 3).

이은우. 2009. “95년만에 문득 意匠이 뭐야?...‘디자인’으로 바꾸기로.” 동아일보(10월 7일).

Japan Patent Office, Asia-Pacific Industrial Property Center, JIII. 2005. “History of Japanese Industrial property System.” https://www.jpo.go.jp/e/news/kokusai/developing/training/textbook/document/index/history_of_japanese_industrial_property_system_2005.pdf (검색일: 2025. 1. 21.).

인터넷 자료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동양고전종합DB(<https://db.cyberseodang.or.kr>)

민중서림 옛센스 일한사전(<https://ja.dict.naver.com>)

세종포스트(<http://www.sjpost.co.kr>)

인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https://iharchive.ifac.or.kr>)

한국사총설DB(<https://db.history.go.kr>)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http://aitr.itkc.or.kr>)

Abstract

A Histor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Design’ as ‘*Uijang*’ (意匠):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Term ‘Design’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Jiyeo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legal reception of the term ‘design’ within the context of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The current law, renamed in 2005, was previously known as ‘*Uijang-beop*’ (意匠法), a title inherited from Japanese law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is legacy illustrates how the legal terminology introduced under Japanese rule remained embedd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for an extended time. Focusing on the term ‘*Uijang*’ (意匠), which was introduced into legal discourse in the late 19th century as a translation of ‘design,’ this study traces its historical trajectory and investigates how the term ha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legal concept of ‘design’ in contemporary Korea.

Keywords | Design Protection Law, Design Patent, *Uijang*, Intellectual Property, Design